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2. 8 선고 2021가단52714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나1964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2. 8 선고 2021가단52714 판결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김학수, 이창현, 황정열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완수

변 론 종 결 2022. 1. 18.

판 결 선 고 2022. 2. 8.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19. 12. 2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6,997,074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997,0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소37308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8.

11. ‘C은 원고에게 12,245,258원 및 그 중 10,530,840원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1. 7.

12.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2011. 9. 1. 확정되었다. 2021. 3. 19. 현재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26,566,947원(= 원금잔액 10,530,840원 + 지연손해금 15,352,850원 + 미수금 683,257원)이다.

나. 피고와 C의 부친 D은 2019. 12.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E, 자녀들인 C, F, 피고, G, H이 있다.

다. 위 공동상속인들은 2019. 12. 2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20. 2. 12.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63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 종결 당시 시가는 63,745,900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20. 1.부터 2020. 4. 1.경 사이 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근저당권부 채무 합계 18,264,916원을 변제하였다.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C에게 별다른 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로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회신결과, 감정인 J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2) 이에 의하면 앞서 본 것처럼 채무초과 상태인 C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와 C 사이에 2019. 12. 22.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 중 C의 상속분인 2/13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서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므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참조). 근저당권 말소 등의 사유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부동산 가액 -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을 비교하여 그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D의 상속인들이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C의 상속지분인 2/13에 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분할협의 이후 같은 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었던 I조합 명의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13 지분의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위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63,745,900원인 사실, 피고가 I조합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18,264,916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 종결 당시 시가 63,745,900원에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위 근저당권의 위 사해행위 당시 피담보채권액 18,264,916원을 공제한 나머지 45,480,984원 중 C의 상속분 2/13 해당하는 6,997,074원이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공동담보가액이 된다.

그리고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위 채권액인 26,566,947원이고 이 사건 협의분할로 인하여 피고가 취득하게 된 이익은 위 6,997,074원이므로, 결국 위 각 금액 중 최소 금액인 6,997,074원이 가액배상의 한도가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6,997,07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997,07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의 생활비, 병원비 등을 부담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유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C의 채무상태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기여분 주장에 관한 판단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게 되고(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참조),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도 위와 같은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2항),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고는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55631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유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거나, D 사망 전 수시로 집에 방문하여 돌보기도 하는 등 피고의 기여분을 공제하면 C의 상속가액은 극히 소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의 기여분 산정에 관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가 있었다거나 그와 관련한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자신의 기여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진희

부동산의 표시

1. 전라북도 익산시 대 191.7㎡

2. 전라북도 익산시

[도로명 주소]

전라북도 익산시

시멘벽돌조 시멘기와 지붕 단층주택 62.81㎡. 끝.

